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 보호 및 정책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.

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표방하는 교육정책과 그 대상인 교육 가족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,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를 포괄하고 있습니다.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.

어느 한 주체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표방한다면 각 주체가 균등하게 부여받아야 할 인권의 내용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할 것입니다.

본 조례는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및 보호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,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성숙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.

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교육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그리고 학교구성원을 정의하였으며, 각 대상이 실행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교육인권 보호·증진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교육인권 실태조사, 교육인권 모니터링 등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인권 교육과 교육인권주간의 운영,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위원회 구성 등 실무운영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교육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각 주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